

대통령령 제 호

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공단은 매년 12월 말까지 출연금의 조성 현황 및 사용 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(한국에너지공단에의 출연) (생략) <신 설>	제45조(한국에너지공단에의 출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공단은 매년 12월말까지 출연금의 조성 현황 및 사용 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